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47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2

1. 근로장려금 제도 세제지원 강화 등 ····· 2

Ⅰ. 개요

1.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47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차규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7. 15.

(3) 회 부 일 : 2025. 7.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를 위하여 거주자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의 산정에 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 가치의 증감이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여 물가가 상승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산정표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근로장려금 제도 세제지원 강화 등

가. 개요

□ 근로장려금 제도(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되었음.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대급부 없이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책대상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금액 등에 따라 차등화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현행 근로장려금 제도에 따르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200만원(단독가구 기준)~4,4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 기준)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1]인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짐.

근로장려금 산정 산식을 살펴보면, ① 일정 소득 이하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금액이 증가하고(점증구간; 그래프 우상향 구간), ② 그 후 최고지급액 구간에 이르면 지급금액이 일정하게

1) 재산합계액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을 의미하며,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함

유지되다가(평탄구간; 그래프 수평구간), ③ 일정 소득 이상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이 감소하여(점감구간; 그래프 우하향 구간) ④ 소득상한구간에 이르면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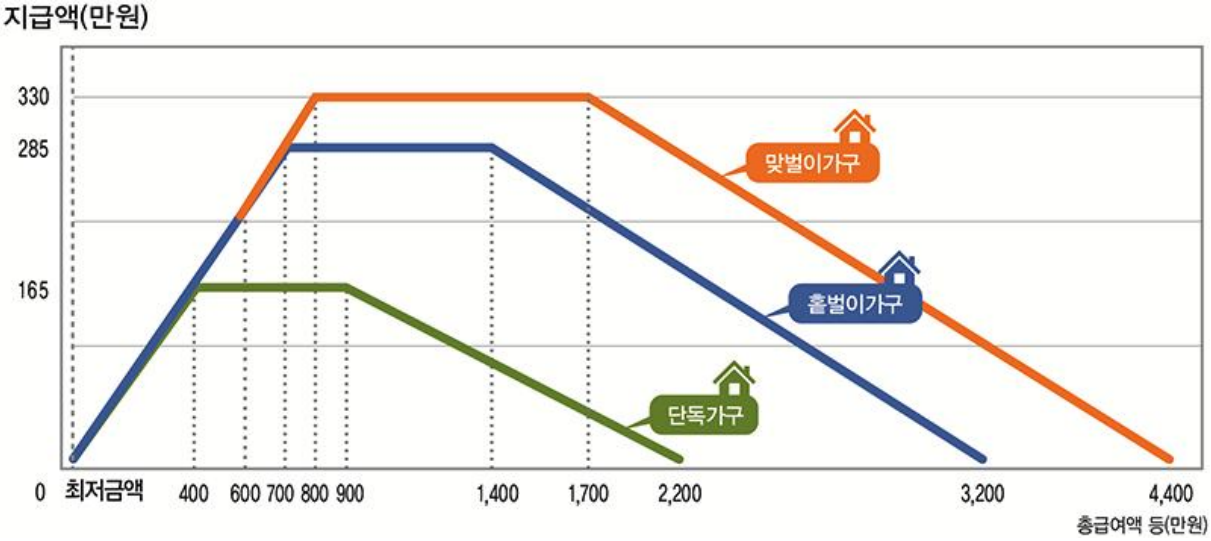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식]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400분의 165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700분의 285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 800분의 330
400~900만원	165만원	700~1,400만원	285만원	800~1,700만원	330만원
900~2,200만원	165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	1,400~3,200만원	285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 1,800분의 285	1,700~4,400만원	33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 2,700분의 330

주)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가구는 약 410만 가구이고 총 지급액 규모는 4조 5,636억원으로, 최근 6년간 지급대상 가구와 총 지급액 규모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가구 및 지급액 추이]

(단위: 만 가구, 억원)

귀속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급 가구	166	179	410	432	426	442	426	410
총 지급액 규모	11,967	13,381	45,049	44,683	44,732	44,871	47,254	45,636

주1. 귀속연도별 최종 지급현황 (다만, 2023년은 기한 후 신청분 제외)
주2. 귀속소득 연도 기준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의 통계로서 조세감면액과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2022년 총지급액은 귀속소득 연도 기준으로 2022년 귀속 상반기(2022년 9월 신청, 12월 지급), 2022년 귀속 하반기(2023년 3월 신청, 6월 지급), 2022년 귀속 정기(2023년 5월 신청, 9월 지급) 신청에 대한 지급액이 포함
자료 : 국세통계포털 14-1-1. 근로·자녀장려금별 신청·지급현황

연도별 근로장려금 관련 조세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4조 7,122억원이 조세감면되었으며, 2026년에는 4조 5,7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근로장려금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9년주1)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조세감면액	49,256	44,826	46,035	45,036	47,281	47,122	46,581	45,760

주1: 지급금액 인상, 단독가구 연령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 완화, 2019년부터 반기신청·지급 시행으로 2019년 상반기 신청분 4,207억원 2019.12월 조기지급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중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 제외(이소영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제100조의3)

○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table><tr><th>가구유형</th><th>총소득기준금액</th></tr><tr><td>단독가구</td><td>2,200만원</td></tr><tr><td>홑벌이가구</td><td>3,200만원</td></tr><tr><td>맞벌이가구</td><td>4,400만원</td></tr></table>
-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미만일 것
* 1.7억원 이상인 경우 50% 지급
- <신 설></td><td>□ 가구 재산 중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은 재산에서 제외

○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미만일 것
* 1.7억원 이상인 경우 50% 지급
-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은 재산 합계액에서 제외

○ 시행일: 공포한 날</td></tr>
</table>

* 이소영의원안 2025. 3. 14. 발의(의안번호 8951)

□ 개정안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관련된 재산요건 중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미만[2]인 현행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 중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은 재산 합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액에서 제외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연간 총소득 합계액 요건과 재산의 합계액에 관한 요건을 두고 있음. 이중 재산요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자동차·예금 등의 합계액으로 그 범위를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과 임차보증금을 포함하는 전세금[3]을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현행 시행령에 따를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금액 또한 재산의 범위에 포함됨. 이에 따라 실제 자산 수준과 부합하지 않게 근로장려금이 역진적으로 지급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4]

□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5.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4) 가령 대출 없이 시세 4억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기준시가가 시세의 60%라고 한다면 법률상 재산기준인 2억 4천만원 미만을 충족하게되어 실제 재산가치가 4억원에 육박함에도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을 충족함. 반면 전세금 3억원의 주택에 2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실제 재산은 1억원이지만, 전세금 3억원이 법령상 재산기준 2억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탈락하게 됨.

2억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산의 합계액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확한 근로장려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근로장려세제의 재산요건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설정하지 않는 요건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 대비 부동산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주택임대 방식이 전세 위주로 되어 있으며,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양도차익의 규모가 상당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받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관련 요건을 도입하였음.[5)]

□ 개정안과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산의 합계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경우 재산요건을 도입한 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대출금을 통해 전세금을 마련한 경우 대출금이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아 실제 자산보다 높은 금액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근로장려금의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인상, 단독가구 연령요건,

5) “근로 자녀 장려금 제도 성과 분석 및 운영방안 연구”, 2017. 기획재정부

소득 및 재산요건이 완화되어 그 조세지출 규모가 4조원 대를 넘어서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요건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대출받음 금액을 제외하여 그 재산요건을 설정하는 경우, 근로장려세제 대상자가 증가하여 그 조세지출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

둘째, 금융기관의 대출 금액을 재산요건에서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개인의 경제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개정안은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원 이하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산요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선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아닌 제3금융권 혹은 사인 간의 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소득 계층의 대출금은 재산으로 합계되어 계산되는 경우, 사금융 등 기회비용이 높은 대출금액이 재산에 포함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저소득층은 1차 금융권에 대한 대출 접근성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채만 차감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될 소지도 있음. 또한 저신용·저소득 서민대상 신용대출, 미소금융 등 저신용자 대상 사업대출, 소액 생계비 대출 등 다양한 목적의 대출이 존재함에도 임대차 보증금 관련 대출만 제외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우려됨.

문 의 처
02)6788-5149

다. 근로장려금 산정 과정에서 물가조정계수 반영(차규근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의 산정(제100조의5) **<신 설>**	□ 물가조정계수 반영 ○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소득기준금액, 총급여액 등 및 구간별 근로장려금에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하고, 조정된 근로장려금산정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함(안 제6항 및 제7항 신설) - **물가조정계수 = 기준 연도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지수의 비율** - **물가조정계수의 산정 및 적용 방법, 근로장려금산정표의 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제100조의5제10항)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 등 필요한 조치 가능. <후단 신설>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에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한 근로장려금산정표를 고시(제10항 후단 신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 등 필요한 조치 가능. 이 경우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에는 제100조의5제6항에 따라 고시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포함해야 함.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차규근의원안 2025. 7. 15. 발의(의안번호 11472)

□ 개정안은 총소득기준금액, 총급여액 등 및 구간별 근로장려금에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이른바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첫째,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로 인해 실질소득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음. 명목소득 증가로 인한 지급대상 제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물가의 변동에 비하여 소득기준의 변동 주기가 이를 따라오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1987년 이후 근로장려금 물가연동제를 실시하면서 대부분 실질 지급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6]. 이에 따르면 매년 변화하는 생계비 등을 법 개정 절차 없이도 정책에 적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첫째, 개정안에 따라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경우,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고 근로장려금 기준의 복잡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여건 및 저소득층 지원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의 총 소득기준금액과 지급금액을 결정할 필요[7]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최근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① 2021년 세법개정으로 소득기준을 상향[8]하고, ②2022년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요 선진국 근로장려금 제도의 영향평가 및 시사점, 2019. p. 36.

7) 기획재정부의 의견임.

8) 소득요건 200만원 상향

세법개정으로 재산기준 완화 및 최대지급액을 상향[9]하였으며, ③ 2024년에는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3,800만원→4,400만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호주,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소득세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폐지한 사례도 있음. 호주의 경우 1976년 물가연동제를 도입했으나 1981년에 폐지하였고, 영국은 2018년에 자본이득세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폐지하였음. 또한 일본의 경우는 1988년 물가연동제 도입여부를 검토했으나, 물가 하락 등으로 인한 세수감수 우려로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149

9) 제산요건을 2억원에서 2.4억원으로 완화하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10%수준 인상